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47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조승환·권영진·김승수

안철수 • 권영세 • 김종양

유용원 · 이성권 · 인요한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운전자가음주운전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를 방조한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 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권유·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48조의2제4항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4조의2, 제45조"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방조 등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지시, 권유 또는 독려하는 행위
- 3.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
- 4.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제148조의2제4항 중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

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람

2.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 전 금지) ①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 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 제44조의2, 제45조-----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 설> 운전행위 방조 등 금지) 누구 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 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 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략)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신 설>

<신 설>

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지시,
권유 또는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

4.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
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는 행위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 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 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람
- 2.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

전한 사람